

인천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가단2808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6468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가단280831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염정환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3. 4. 6.

판결선고 2023. 4. 20.

주문

1. 가.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2.

3. 29. 접수 제996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가. 피고 주식회사 C과 D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3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2. 3. 30.

접수 제1005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가소2975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31. ‘D은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2. 9. 4. D에게 송달되어 2012. 9. 19. 확정되었다.

나. D은 2022. 3. 29.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99625호로, 등기원인을 2022. 3. 29.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D은 2022. 3. 3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100502호로, 등기원인을 2022. 3. 30.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D은 이 사건 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가 D가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D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D은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B와 D 사이의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19125호로 D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 및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

별지